

의안번호	2214437
의 퇴 인	김미애 의원
회 답 일	2025. 11. 24.
추 계 번호	25F6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6년 1조 3,596억원, 2030년 2조 1,546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조 9,778억원(연평균 1조 9,9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현행 증여세 세율은 동법 제56조에 따라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속세율 인하시 증여세율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남
 - 개정안은 세율 인하 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동 추계에서 제외
 - 이를 고려하면, 동 추계의 세수 감소효과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및 증여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가전략기술기업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 인상 (안 제18조의2)	추	정	곤	란			
상속세율 인하(안 제26조)	-13,596	-21,546	-21,546	-21,546	-21,546	-99,778	-19,956
합 계	-13,596	-21,546	-21,546	-21,546	-21,546	-99,778	-19,956

주: 1. 현행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되어 있어 상속세 세율 조정 시 증여세도 자동적으로 연동
 2. 2026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반영하여 상속세 6/12, 증여세 9/12 적용하여 산정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국가전략기술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 인상 - 국가전략기술기업: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기업 <table> <tr> <th rowspan="3">가업경영기간</th> <th colspan="3">공제한도(억원)</th> </tr> <tr> <th rowspan="2">현행</th> <th colspan="2">개정안</th> </tr> <tr> <th>일반</th> <th>국가전략기술기업</th> </tr> <tr> <td>10년 이상~20년 미만</td> <td>300</td> <td>300</td> <td>360</td> </tr> <tr> <td>20년 이상~30년 미만</td> <td>400</td> <td>400</td> <td>480</td> </tr> <tr> <td>30년 이상</td> <td>600</td> <td>600</td> <td>720</td> </tr> </table>	가업경영기간	공제한도(억원)			현행	개정안		일반	국가전략기술기업	10년 이상~20년 미만	300	300	360	20년 이상~30년 미만	400	400	480	30년 이상	600	600	720	
가업경영기간	공제한도(억원)																							
	현행	개정안																						
		일반	국가전략기술기업																					
10년 이상~20년 미만	300	300	360																					
20년 이상~30년 미만	400	400	480																					
30년 이상	600	600	720																					
2	안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10%p 인하 <table> <tr> <th rowspan="2">과세표준</th> <th colspan="2">세율(%)</th> </tr> <tr> <th>현행</th> <th>개정안</th> </tr> <tr> <td>1억원 이하</td> <td>10</td> <td>10</td> </tr> <tr> <td>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td> <td>20</td> <td>20</td> </tr> <tr> <td>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td> <td>30</td> <td>30</td> </tr> <tr> <td>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td> <td>40</td> <td rowspan="2">40</td> </tr> <tr> <td>30억원 초과</td> <td>50</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1억원 이하	10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40	30억원 초과	50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1억원 이하	10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40																						
30억원 초과	5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향후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가업승계 시점, 가업용 자산 규모 등을 예측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2	안 제26조 (상속세 세율)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단, 2026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및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감안하여 상속세는 6개월분, 증여세는 9개월분만 반영
- 향후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와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비중, 전체 증여건수와 전체 증여건수 대비 과세대상 증여건수 비중의 연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의 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최근 5년간 재산가액 구간별 피상속인수 또는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의 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의 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가정
 - － 상속세의 세액공제는 증여세액공제(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 및 신고세액공제만 발생한다고 가정
 - ※ 증여세액공제는 세율의 변화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최근 5년간 연평균 공제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 신고세액공제는 추정된 1인당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값에 공제율(3%)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제액으로 가정
 - － 증여세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공제(증여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 및 신고세액공제만 발생한다고 가정
 - ※ 납부세액공제는 세율의 변화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최근 5년간 연평균 공제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 신고세액공제는 추정된 1인당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값에 공제율(3%)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제액으로 가정
-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동 추계에서 제외함

-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가업승계 시점과 가업용 자산 규모 등의 추이를 예측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인상되는 기업인 국가전략기술기업으로 인정되는 요건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
 - 이외에도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적용 여부, 가업용 자산규모, 승계시점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관련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3.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
 -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서 10%,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가 적용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
 -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속세 세율 인하 시 증여세율도 함께 인하
 - 개정안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50%를 40%로 10%p 인하

[표 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단위: %)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억원 이하	10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40
30억원 초과	50	

나. 추계방법

- 개정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의 수와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추정한 후,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와 증여건수의 연평균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며, 과세대상의 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최근 5년간 구간별 연평균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
 -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가정하여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1인당 결정세액의 차이(세수효과)를 산정
 - 1인당 세수효과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과세대상의 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정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분포 추정

- (상속세 과세대상 현황)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체 피상속인수 및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연평균 1.6만명 수준으로, 전체 피상속인수(33.9만명)의 4.8% 수준

[표 3] 전체 피상속인수 및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추이: 2020~2024년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20~‘24년)
전체 피상속인수(A)	351,648	344,184	348,159	292,545	358,979	339,103
-과세대상(B)	10,181	12,749	15,760	19,944	21,193	16,173
(비중, B/A)	(2.9)	(3.7)	(4.5)	(6.8)	(5.9)	(4.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및 비중

(단위: 명, %)

상속재산가액구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비중 (‘20~’24년)
1억원 이하	63 (0.6)	72 (0.6)	57 (0.4)	84 (0.4)	48 (0.2)	0.4
5억원 이하	376 (2.7)	409 (3.2)	426 (2.7)	551 (2.8)	338 (1.6)	2.8
10억원 이하	2,687 (26.4)	3,202 (25.1)	4,018 (25.5)	5,026 (25.2)	5,801 (27.4)	25.9
30억원 이하	5,619 (55.2)	7,219 (56.6)	8,955 (56.8)	11,066 (55.5)	11,694 (55.2)	55.9
50억원 이하	774 (7.6)	1,036 (8.1)	1,289 (8.2)	1,928 (9.7)	2,008 (9.5)	8.6
100억원 이하	449 (4.4)	532 (4.2)	677 (4.3)	850 (4.3)	839 (4.0)	4.2
500억원 이하	198 (1.9)	256 (2.0)	312 (2.0)	402 (2.0)	430 (2.0)	2.0
1,000억원 이하	9 (0.1)	14 (0.1)	15 (0.1)	22 (0.1)	21 (0.1)	0.1
1,000억원 초과	6 (0.1)	9 (0.1)	11 (0.1)	15 (0.1)	14 (0.1)	0.1
합계	10,181 (100.0)	12,749 (100.0)	15,760 (100.0)	19,944 (100.0)	21,193 (100.0)	100.0

주: ()는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및 분포 추정) 향후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수와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연도별로 16,173명으로 추정
-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

[표 5] 향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추정치

(단위: %, 명)

상속재산 가액구간	피상속인수 비중 (‘20~’24년 연평균, A)	구간별 과세대상 추정치 (B=A×16,173)
1억원 이하	0.4	71
5억원 이하	2.8	452
10억원 이하	25.9	4,191
30억원 이하	55.9	9,034
50억원 이하	8.6	1,392
100억원 이하	4.2	682
500억원 이하	2.0	323
1,000억원 이하	0.1	16
1,000억원 초과	0.1	11
합계	100.0	16,173

□ (증여세 과세대상 현황)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체 증여건수 및 과세대상 증여건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연평균 19.1만건 수준으로, 전체 증여건수(51.2만건)의 37.3% 수준

[표 6] 전체 증여건수 및 과세대상 증여건수 추이: 2020~2024년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20~’24년)
전체 증여건수(A)	461,800	800,109	711,875	530,004	542,843	511,549
-과세대상(B)	183,499	275,592	252,412	208,508	178,660	190,958
(비중, B/A)	(39.7)	(34.4)	(35.5)	(39.3)	(32.9)	(37.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과세대상 증여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7]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과세대상 증여건수 및 비중

(단위: 명, %)

증여재산가액구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비중 (‘20~’24년)
1억원 이하	97,369 (53.6)	136,135 (49.4)	135,330 (53.6)	113,868 (54.6)	97,134 (54.4)	53.0
5억원 이하	65,488 (35.7)	103,479 (37.5)	89,258 (35.3)	71,746 (34.4)	62,557 (35.0)	35.6
10억원 이하	14,344 (7.8)	25,979 (9.4)	19,157 (7.6)	15,842 (7.6)	12,730 (7.1)	7.9
30억원 이하	5,179 (2.8)	8,409 (3.1)	7,242 (2.9)	5,760 (2.8)	5,047 (2.8)	2.9
50억원 이하	469 (0.3)	644 (0.2)	695 (0.3)	626 (0.3)	555 (0.3)	0.3
100억원 이하	350 (0.2)	420 (0.2)	543 (0.2)	368 (0.2)	361 (0.2)	0.2
500억원 이하	253 (0.1)	526 (0.2)	322 (0.1)	256 (0.1)	243 (0.1)	0.1
1,000억원 이하	17 (0.01)	83 (0.03)	24 (0.01)	13 (0.01)	18 (0.01)	0.01
1,000억원 초과	30 (0.02)	25 (0.01)	18 (0.01)	29 (0.01)	15 (0.01)	0.01
합계	183,499 (100.0)	275,592 (100.0)	252,412 (100.0)	208,508 (100.0)	178,660 (100.0)	100.0

주: ()는 과세대상 증여건수의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과세대상 증여건수 및 분포 추정) 향후 과세대상인 증여건수와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 향후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연도별로 190,958건으로 추정
- 향후 과세대상 증여건수의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과세대상 증여건수의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

[표 8] 향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과세대상 증여건수 추정치

(단위: %, 명)

증여재산 가액구간	증여건수 비중 (‘20~’24년 연평균, A)	구간별 과세대상 추정치 (B=A×190,958)
1억원 이하	53.0	101,228
5억원 이하	35.6	67,990
10억원 이하	7.9	15,107
30억원 이하	2.9	5,473
50억원 이하	0.3	525
100억원 이하	0.2	331
500억원 이하	0.1	258
1,000억원 이하	0.01	25
1,000억원 초과	0.01	21
합계	100.0	190,958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효과 추정

-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산출세액 차이 추정) 상속재산가액 구간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인당 과세표준을 구한 후,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반영하여 1인당 산출세액의 차이를 추정
 - 1인당 과세표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상속재산가액 50억원 초과 구간부터 1인당 과세표준이 연평균 30억원을 초과

[표 9]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 추이

(단위: 억원, %)

상속재산 가액구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당 연평균 과세표준 (‘20~’24년)
1억원 이하	피상속인수(A)	63	72	57	84	70	0.3
	과세표준(B)	23	27	21	31	16	
	1인당과세표준(B/A)	0.4	0.4	0.4	0.4	0.2	
5억원 이하	피상속인수(A)	376	409	426	551	446	1.6
	과세표준(B)	587	661	722	953	672	
	1인당과세표준(B/A)	1.6	1.6	1.7	1.7	1.5	
10억원 이하	피상속인수(A)	2,687	3,202	4,018	5,026	4,137	2.1
	과세표준(B)	5,187	6,403	8,051	9,764	11,179	
	1인당과세표준(B/A)	1.9	2.0	2.0	1.9	2.7	
30억원 이하	피상속인수(A)	5,619	7,219	8,955	11,066	8,918	5.9
	과세표준(B)	31,253	41,572	41,572	64,051	68,035	
	1인당과세표준(B/A)	5.6	5.8	4.6	5.8	7.6	
50억원 이하	피상속인수(A)	774	1,036	1,289	1,928	1,375	28.7
	과세표준(B)	14,245	19,937	75,583	37,056	38,205	
	1인당과세표준(B/A)	18.4	19.2	58.6	19.2	27.8	
100억원 이하	피상속인수(A)	449	532	677	850	674	41.4
	과세표준(B)	17,290	21,070	26,975	33,984	32,983	
	1인당과세표준(B/A)	38.5	39.6	39.8	40.0	49.0	
500억원 이하	피상속인수(A)	198	256	312	402	319	136.8
	과세표준(B)	26,036	33,592	38,323	51,370	54,384	
	1인당과세표준(B/A)	131.5	131.2	122.8	127.8	170.7	
1,000억원 이하	피상속인수(A)	9	14	15	22	16	613.5
	과세표준(B)	5,228	7,420	8,337	12,860	13,102	
	1인당과세표준(B/A)	580.9	530.0	555.8	584.5	816.1	
1,000억원 초과	피상속인수(A)	6	9	11	15	11	4,949.5 ¹⁾
	과세표준(B)	27,875	23,846	305,948	129,421	42,137	
	1인당과세표준(B/A)	4,645.9	2,649.6	27,813.4	8,628.1	3,874.5	

주: 1) 2022년 특이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1인당 과세표준 추정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반영하여 1인당 산출세액의 차이를 산정
 - 최근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연평균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가액 50억원 초과 구간부터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 차이가 발생

[표 10]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 추정

(단위: 억원, %)

상속재산가액 구간	1인당 과세표준 (A, 억원)	세율(%)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 ($A \times [B - C]$, 억원)
		현행(B)	개정안(D)	
1억원 이하	0.3	10	10	-
5억원 이하	1.6	20	20	-
10억원 이하	2.1	20	20	-
30억원 이하	5.9	30	30	-
50억원 이하	28.7	40	40	-
100억원 이하	41.4	50	40	1.1
500억원 이하	136.8	50	40	10.7
1,000억원 이하	613.5	50	40	58.4
1,000억원 초과	4,949.5	50	40	492.0

□ (상속세 전체 세수효과)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산출세액 차이에 인원수를 반영한 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정

-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인원수를 반영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정
-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에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세액 변화분(세수효과)을 추정

- 세액공제 중 증여세액공제는 현행 및 개정안의 금액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3%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반영

[표 11]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상속재산가액 구간	피상속인수 추정치 (A, 명)	산출세액 변화분(억원)		결정세액 변화분(억원)	
		1인당(B)	전체 ($C = A \times B$)	신고세액공제 등 차감 비중(D)	전체 ($C \times [1 - D]$)
100억원 이하	682	1.1	776	0.03	753
500억원 이하	323	10.7	3,450		3,346
1,000억원 이하	16	58.4	934		906
1,000억원 초과	11	492.0	5,411		5,249
합계	-	-	10,571	-	10,254

□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산출세액 차이 추정) 증여재산가액 구간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인당 과세표준을 구한 후,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반영하여 1인당 산출세액의 차이를 추정

- 1인당 과세표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증여재산가액 30억원 초과 구간부터 1인당 과세표준이 연평균 30억원을 초과

[표 12]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 추이

(단위: 억원, %)

증여재산 가액구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당 연평균 과세표준 (‘20~’24년)
1억원 이하	증여건수(A)	97,369	136,135	135,330	113,868	100,838	0.3
	과세표준(B)	25,279	36,166	36,215	29,493	25,898	
	1건당과세표준(B/A)	0.3	0.3	0.3	0.3	0.3	
5억원 이하	증여건수(A)	65,488	103,479	89,258	71,746	67,728	1.7
	과세표준(B)	105,981	173,522	152,346	123,038	104,146	
	1건당과세표준(B/A)	1.6	1.7	1.7	1.7	1.5	
10억원 이하	증여건수(A)	14,344	25,979	19,157	15,842	15,049	4.5
	과세표준(B)	62,696	117,664	91,994	72,963	61,146	
	1건당과세표준(B/A)	4.4	4.5	4.8	4.6	4.1	
30억원 이하	증여건수(A)	5,179	8,409	7,242	5,760	5,452	12.9
	과세표준(B)	68,239	105,997	96,268	76,490	67,474	
	1건당과세표준(B/A)	13.2	12.6	13.3	13.3	12.4	
50억원 이하	증여건수(A)	469	644	695	626	523	35.5
	과세표준(B)	16,019	22,805	24,684	21,601	19,924	
	1건당과세표준(B/A)	34.2	35.4	35.5	34.5	38.1	
100억원 이하	증여건수(A)	350	420	366	368	330	68.9
	과세표준(B)	23,998	29,570	23,953	24,804	23,970	
	1건당과세표준(B/A)	68.6	70.4	65.4	67.4	72.7	
500억원 이하	증여건수(A)	253	418	322	256	257	202.9
	과세표준(B)	48,217	89,572	69,651	50,910	49,953	
	1건당과세표준(B/A)	190.6	214.3	216.3	198.9	194.3	
1,000억원 이하	증여건수(A)	17	83	24	13	25	649.3
	과세표준(B)	12,297	51,963	17,023	9,124	12,059	
	1건당과세표준(B/A)	723.4	626.1	709.3	701.8	486.2	
1,000억원 초과	증여건수(A)	30	25	18	29	21	1,960.8
	과세표준(B)	61,235	50,627	39,065	51,486	37,404	
	1건당과세표준(B/A)	2,041.2	2,025.1	2,170.3	1,775.4	1,792.3	

주: 1) 2022년 특이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1인당 과세표준 추정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반영하여 1인당 산출세액의 차이를 산정
 - 최근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연평균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가액 30억원 초과 구간부터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 차이가 발생

[표 13]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 추정

(단위: 억원, %)

증여재산가액 구간	1건당 과세표준 (A, 억원)	세율(%)		1건당 산출세액 변화분 (A×[B-C], 억원)
		현행(B)	개정안(D)	
1억원 이하	0.3	10	10	-
5억원 이하	1.7	20	20	-
10억원 이하	4.5	20	20	-
30억원 이하	12.9	40	40	-
50억원 이하	35.5	50	40	0.6
100억원 이하	68.9	50	40	3.9
500억원 이하	202.9	50	40	17.3
1,000억원 이하	649.3	50	40	61.9
1,000억원 초과	1,960.8	50	40	19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증여세 전체 세수효과) 증여재산가액 구간별 1인당 산출세액 차이에 증여건수를 반영한 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정
-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증여건수를 반영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정
 -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에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세액 변화분(세수효과)을 추정
 - 세액공제 중 납부세액공제는 현행 및 개정안의 금액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3%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반영

[표 14] 증여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증여재산가액 구간	증여건수 추정치 (A,건)	산출세액 변화분(억원)		결정세액 변화분(억원)	
		1인당(B)	전체 (C=A×B)	신고세액공제 등 차감 비중(D)	전체 (C×[1-D])
50억원 이하	525	0.6	290	0.03	282
100억원 이하	331	3.9	1,288		1,249
500억원 이하	258	17.3	4,460		4,326
1,000억원 이하	25	61.9	1,548		1,502
1,000억원 초과	21	193.1	4,055		3,933
합계	—	—	11,641	—	11,29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상속세 및 증여세 연도별 세수효과) 상속세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

- 단, 2026년 세수효과의 경우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상속세는 6개월분, 증여세는 9개월분만 반영
 - － 세목별 신고기한: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 ※ 향후 월별 징수분은 균등하다고 가정

[표 15] 상속세 세율 조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도별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상속세 세수 감소효과(A)	5,127	10,254	10,254	10,254	10,254
증여세 세수 감소효과(B)	8,469	11,292	11,292	11,292	11,292
세수 감소효과 합계(A+B)	13,596	21,546	21,546	21,546	21,546

(4)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6년 1조 3,596억원, 2030년 2조 1,546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조 9,778억원(연평균 1조 9,9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현행 증여세 세율은 동법 제56조에 따라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속세율 인하시 증여세율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남
 - 개정안은 세율 인하 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동 추계에서 제외
 - 이를 고려하면, 동 추계의 세수 감소효과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및 증여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가전략기술기업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 인상 (안 제18조의2)	추	정	곤	란			
상속세율 인하(안 제26조)	-13,596	-21,546	-21,546	-21,546	-21,546	-99,778	-19,956
합 계	-13,596	-21,546	-21,546	-21,546	-21,546	-99,778	-19,956

주: 1. 현행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되어 있어 상속세 세율 조정 시 증여세도 자동적으로 연동
 2. 2026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반영하여 상속세 6/12, 증여세 9/12 적용하여 산정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